

5G기반 VR·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5G기반 VR·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VR·AR(가상·증강현실) 디바이스는 실감콘텐츠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장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2023년까지 109조원 규모 (연평균 47%)로 성장 전망
- 나.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5G기반 VR·AR 디바이스 중심의 혁신 성장거점 마련 및 디바이스 핵심부품 개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
- 다.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출연금액 : 금1,200,000천원(도비 240,000, 시비 960,000)

※ 2차년도('21. 1 ~ 12월) 소요예산 중 지방비 매칭금액

(3) 사업내용 : 5G기반 VR·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

(4) 출연근거

○ 법령 : 지방재정법(제18조), 국가균형발전특별법(제3조), 과학기술기본법(제16조의3), 산업기술혁신촉진법(제11조, 제19조),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(제15조~제19조, 제32조), 정보통신산업 진흥법(제3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
○ 조례 :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(제5조, 제9조, 제10조)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나. 주요 사업

(1) 사업명 : 5G기반 VR·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

(2) 사업기간 : 2020년 4월 ~ 2024년 12월(57개월)

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 (금오테크노밸리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)

(4) 총사업비 : 150억원 [국비 100, 도비 10, 시비 40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	
	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계	150	24.5	37	38.5	28	22
국비	100	15	25	26	19	15
도비	10	1.9	2.4	2.5	1.8	1.4
시비	40	7.6	9.6	10	7.2	5.6

(5) 추진주체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경상북도, 구미시

(6) 전담기관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

(7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8) 사업내용

- VR·AR 디바이스 개발 기술지원을 위한 개발실, 실증실, 사업화 지원실 등 기업경쟁력 강화·지원을 위한 공간조성
- VR·AR 디바이스 핵심부품 제작, 품질인증·평가 및 실증을 위한 장비 구축
- VR·AR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5G 기반 핵심 디바이스용 부품·소재 기술 상용화 지원
- 2~5G 시험망 기반 VR·AR 디바이스 상호운용성·안정성·서비스 품질 등 시험평가 인증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제정
-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풀 구성을 통한 기업연계 매칭 지원, 제품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

(9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9. 10~12. : 2020년 국비 건의 및 확보
- 2019. 10~2020. 4. : 연구용역
- 2020. 3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신청
- 2020. 3 :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(경북 구미)
- 2020. 4 :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
- 2020. 5~12 : 장비구축, 공정기술 지원, 가이드라인 제작 등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선도기술(5G, AI, IoT 등)을 활용한 초실감 VR·AR 서비스가 융합 산업의 촉매제 역할로 부상
- VR·AR 디바이스 구성품은 모바일, 디스플레이 핵심부품(카메라, 마이크로디스플레이, 센서 등)과 유사하여 지역의 기존 모바일 제조업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기대
- VR·AR 디바이스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경쟁력 확보로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3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~제19조, 제32조
- 「정보통신산업진흥법」 제3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, 제9조, 제10조
-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□ 「과학기술기본법」

제16조의3(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)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·유통

2.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·단체와 교육기관·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
3. 전문인력의 양성
4.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인력·기술·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·협력
5.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
6.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
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(산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"산업기술 개발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, 부품·소재 및 장비·설비(플랜트를 포함한다) 기술
2.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
3.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,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
4.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·시스템 기술
5.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·자원기술
6.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2조 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
7. 디자인·브랜드·표준 관련 기술, 유통·전자거래 및 마케팅·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
8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
9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
10. 삭제 <2013. 3. 23.>
11.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
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
13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

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

2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

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

2.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

2. 산업기술 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

3. 연구장비·시설·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(集積化) 촉진

4.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·관리 및 활용의 촉진

5. 산업기술의 표준화, 디자인·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

6.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

7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-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(제1항은 제외한다)
·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관연구기관"
은 "주관기관"으로, "산업기술개발사업"은 "산업기술기반조성사
업"으로 본다.

□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

제15조(유망 기술·서비스 등의 지정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
장관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·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산업
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
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(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) 등을 지정
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
고시하여야 하며, 지정 방법,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
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·
공공기관·기업·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
할 수 있다.

제16조(기술·서비스 등의 표준화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
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·개정
및 폐지와 그 보급. 다만,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
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.

2.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·연구개발

3.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 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기술·서비스 등의 품질인증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편의성·안정성·신뢰성·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(이하 "품질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2.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3.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⑥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
⑦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
2.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·평가·관리
3. 국가·지방자치단체, 대학·정부출연연구기관,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·알선 지원
4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·보급
5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·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·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·분석·제공
6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
7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
8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·활용
9.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·홍보·활용

10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

11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관련 시범사업

12.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·단체에 위탁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,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,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

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, 과학기술인 단체 등(이하 “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(이하 “진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

2.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

가. 첨단·지식기반·뷰티·탄소 및 물산업

나. 부품·소재산업

다. 신성장동력산업

3. 중소기업 신기술·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(이하 “관련사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력 육성사업
2. 문화 확산사업
3. 혁신역량 등 강화·활성화사업

제9조(관련사업 추진)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경비보조)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김 창 열
	담 당	신 미 정
	담 당 자	김 혜 진 (480-6153)